

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(신고)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말소신고 3일
운용 기관	명칭		전화번호		
	소재지				
소유자 (대표자)	성명		생년월일		
	주소				
구급차등 구분	[] 특수 구급차, [] 일반 구급차, [] 선박, [] 항공기				
	공통	등록번호			
		제작년도			
	구급차	차대번호			
자동차 최초등록일					
말소사유	[]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경우 [] 「항공안전법」 제15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이 말소된 경우 []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				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말소 통보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소유자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	1. 구급차등 운용 통보(신고)확인증, 부착용 통보(신고)확인증 2.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, 「선박법 시행규칙」 제23조에 따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「항공기등록규칙」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